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를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스토킹방지법」이 개정(법률 제21628호, 2026. 5. 12. 공포, 2026. 8. 1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지원시설의 장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도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관련 규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3) 삭제
- 나. 지원시설 운영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전자적 보관 허용(안 별표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 조화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 ~ 7.) 중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중 “서류”를 “서류(전자적 파일 형태의 장부 및 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u> <u>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u> <u>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u>	<u><삭 제></u>

〈 의안 소관 부서명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연 락 처	(02) 2100 - 6427